

『**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8월 13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가. 「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」 별표에 규정된 사용료 중 기본시설사용료를 제외한 부속설비사용료와 기타시설사용료는 실제 사용에 필요한 최저비용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제 16조에 규정된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을 기본시설사용료로 제한하고자 함.

나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에 대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

2 주요내용

가.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규정의 사용료를 기본시설사용료로 변경함(안 제16조제4항, 제5항)

나.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 기본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제16조제6항 신설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ysi3312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: ○성 명: ○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국가,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및 인천문화재단”을 “국가 및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 로, “대하여” 를 “대해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료” 를 “기본시설사용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사용료” 를 “기본시설사용료” 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(재)인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) ① · ② (생 략) ③ <u>국가,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및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</u>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<u>사용료</u> 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 1. · 2. (생 략) ⑤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중 시가 후원하는 행사의 <u>사용료</u> 는 비영리 목적일 경우 전액을, 영리목적일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16조(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국가 및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<u>대해서</u> ----- -----. ④ ----- ----- ----- <u>기본시설사용료</u>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<u>기본시설사용료</u> - ----- ----- -----. ⑥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시에 등록된 전문 예술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사용

	<u>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(재)인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u>
--	---